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8. 김석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3차 전체회의(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석기 의원)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

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서기영)

김석기의원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① 제7조제5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대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19조제1항의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에서 시설경비업무 중 제7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호).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먼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 종사 금지 완화(제7조제5항 단서 신설)와 관련하여,

김석기의원안은 경비업자가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관리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이고, 한병도의원안은 시설경비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비업무에 대하여 그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비록 시설경비업무 외의 다른 경비업무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과 같이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일률·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비업 전반에 대한 위헌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모든 경비업무를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현행법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3항 단서와 제28조제2항제9호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경비업자가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필요적 허가취소에서 제외하거나(김석기의원안 제19조제1항), 임의적 허가취소로 완화하는 것(한병도의원안 제19조제1항·제2항)과 관련하여,

김석기의원안은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무 중 제7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이고,

한병도의원안은 모든 경비업무에 대하여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 필요적 취소사유에서 삭제하되,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일률·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시설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가 된 과잉금지원칙 위

반의 문제는 개정안 제7조제5항 단서와 같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위반시 제재를 임의적 취소로 완화하는 것 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입법조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 별도의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봄.

참고로, 현행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조은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